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1. 주식회사 효성은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1 에 의거 2018 년 4 월 27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효성티앤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중공업/건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산업자재 사업부문(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을 분할하여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화학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효성화학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며(이하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 효성화학 주식회사를 각 “분할신설회사”라 함), 주식회사 효성은 분할 후에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다 음 -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비율
분할회사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효성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0.3928289
분할신설회사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섬유/무역 사업부문	0.1232345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중공업/건설 사업부문	0.2655246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	산업자재 사업부문 (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	0.1275704
	효성화학 주식회사	화학 사업부문	0.0908416

2. 위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효성화학 주식회사는 2018 년 6 월 1 일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 530 조의 11 및 동법 제 527 조 4 항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효성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섬유/무역 사업부문, 중공업/건설 사업부문, 산업자재 사업부문(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 화학 사업부문(각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신설회사로 설립하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됨.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분할존속

회사는 변경상장하고, 각 분할신설회사는 각 재상장 함. (18.7.13일 예정)

(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본건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함.

(3)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분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928289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증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함.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내용

- 상호: 효성화학 주식회사 (영문명 : Hyosung Chemical Corporation)
-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 대표이사: 박준형
- 주식에 관한 사항
 - 발행할주식의 총수: 200,000,000주
 - 주당액면가액: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3,190,126주
 - 주식의 배정: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하며, 그 비율은 보유한 주식 1주당 0.0908416주임
 - 1주미만 단주는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초일의 증가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함
- 자본금: 15,950,630,000원
- 결산기: 매 사업연도 12월 31일.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본건 분할 내용 】

구분	회사명(영문명)	사업부문
분할회사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효성 (Hyosung Corporation)	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 등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 업부문
분할신설회사	효성티앤씨 주식회사 (Hyosung TNC Corporation)	섬유/무역 사업부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Hyosung Heavy Industries Corporation)	중공업/건설 사업부문
	효성첨단소재 주식회사 (Hyosung Advanced Materials Corporation)	산업자재 사업부문 (안양사업장 관련 사업부문 제외)
	효성화학 주식회사 (Hyosung Chemical Corporation)	화학 사업부문

2. 분할의 진행경과

2018년 1월 3일	이사회 결의(회사분할 승인)
2018년 4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분할계획서 승인)
2018년 4월 30일 ~ 2018년 5월 31일	구주권 제출기간
2018년 6월 1일	본건 분할 기일
2018년 6월 1일	이사회 결의(창립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

- 공고일: 2018년 6월 1일(금)
- 공고방법: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http://www.hyosungChemical.com>)

2018년 6월 1일

효성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준 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